**채무조정 요청서**

**□ 신청인 기본사항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채무자명 | **생년월일** | **연락처** | **주소** |
|  |  |  |  |

**□ 채무조정 요청대상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최초 대출회사** | **최초 대출일자** | **원리금 잔액(원)** |
|  |  |  |

**□ 채무조정 요청사유(해당하는 항목체 체크해 주세요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실직** | **폐업** | **질병 및 사고** | **소득 감소** |
| □ | □ | □ | □ |
| **기타** | | | |
| □ ( ) | | | |

**□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**

|  |
| --- |
| ◾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  ◇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(단, 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해당됨)  ◇ ｢개인채무자보호법｣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 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◇ ｢개인채무자보호법｣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  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 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  ◇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  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 채무조정 요청서,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(소득활동 증빙 등), 채무조정안(생략가능)  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고객센터(☎02-707-0001)로 연락바랍니다. |

**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**

**년 월 일**

**신청인 본인 : (인)**